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6. 12.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368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5. 30. 오온누리 의원 대표발의(8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2024. 6. 12.)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대표발의자 : 오온누리)

가. 제안이유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 대응 및 24시간 적시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통한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지정정신의료기관과 협약을 하고, 병상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지정 근거 마련 (제8조)
-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병상 운영비 예산 지원(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 입법예고: 해당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구민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한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관련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정신응급 후송비용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오온누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 임.
- 안 제2조(정의) 규정 중 제4호 및 제5호는 응급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개념을 정의한 것으로 법률상 그 개념이 확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고 관련 판결문에서도 이를 인용하고 있음. 다만, 제4호 중 ‘자해·타해’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제4항은 기존 보건복지부·경찰청·소방청·국립정신건강센터가 제시한 정신질환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 체계에 따라 업무 진행시 수반되는 지원을 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임.
- 현재 정신질환 응급의료 협력체계는 각 기관별 업무 분장과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이미 적용 중이므로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임. 다만, 정신질환 업무수행 시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받는 대상이 모호하고 책무규정에서는 구체적인 법적인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여져 예산지원에 대한 규정보다는 선언적·상징적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8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제1항은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음을 재확인하는 규정으로 보임.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50조에 따라 정신응급 대응 상황에서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하여 공공병상을 마련하되, 불가능한 상황이면 가장 가까운 시·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지정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에 필요한 절차에 따라 기술된 내용으로 보임.
- 안 제9조(예산지원 등)제2항은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존의 조문을 구체화하여 열거한 것임. 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방서가 행정적 지원을 함에 따라 비용 발생은 거의 없었으며 나머지 조항의 비용에 대해서는 정신응급 입원의뢰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또한 향후 비상시 소방서 지원으로 처리하기에 부족하거나 응급상태가 심각한 경우 사설업체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는 바 관내 사설업체 목록, 상황적 특수성을 설명하는 기록, 사설업체를 이용함에 있어서 형평성 및 투명성 등이 잘 관리되어야 할 것임. 제2호의 병상 확보 비용은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병상에 대한 병상 운영비로서 일종의 사용료로 이해됨. 이 병상 운영비는 매월 병상 운영 실적을 보고하여 접수한 후 국비 50%, 구비 50%의 구성으로 지정의료기관에 월별 병상 운영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비용의 지급은 지정의료기관이 대상이라 할 것임. 제3호의 외래치료 비용은 해당 질환이 발생한 구민에게 지급되며, 제4호의 그 밖의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임.

- 안 제10조(위원회 설치·운영 등)제6항은 조례의 제명을 바로잡으려는 것임.
- 고위험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수요 증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지정 필요성, 응급입원 후 행정입원 전환을 위한 지정정신의료기관 부재,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및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다만, 제3조제4항에 대한 조문은 예산지원에 대한 조문이 제8조에 규정하고 있어 선언적·상징적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368호

제안일자 : 2024.6.12.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용어를 구분해서 명확히 수정하고자 함
- 개정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자해·타해로 구분하여 명확히 표기(안제2조제4호, 안제8조제1항, 안제9조제2항)
- 개정안 제8조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를 수정(안제3조제4항)

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호 중 “자·타해”를 “자해·타해”로 한다.

안 제3조제4항 중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자·타해”를 “자해·타해”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타해”를 “자해·타해”로 한다.

칙 제37조에 따라 지정
정신의료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0조
에 따라 신속하게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
병상을 마련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
내 정신의료기관을 우
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구에 있는 정신의료
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
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후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
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
용
2. 정신 응급입원 수요

제9조(예산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해·타
해 -----

1. ~ 4. (개정안과 같
음)

에 효과적으로 대응
을 위한 정신 응급입
원 공공병상 확보 비
용

3.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
라 발생하는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
환자 보호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 5.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수반되는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신속하게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중전의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 정신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위한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비용
3.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

제10조(중전의 제9조)제6항 중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응급정신질환자”란 <u>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5.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u>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u></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③ (생략)</p> <p><u><신설></u></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u></p>

<신 설>

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수반되는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

기관) ① 구청장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신속하게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

제9조(예산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

큰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후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 ⑤ (생략)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생략)

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 정신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위한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비용
3.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

제10조(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